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6
----------	-----

2016. 2. 4.(목)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월 26일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15. 12. 3.): 상정(심사보류)
-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6. 1. 26.): 재상정(원안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가. 제안이유

- '14. 12월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가 삭제되어,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안 제5조, 제6조)
-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제 도입(안 제20조)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청구 및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조항이 삭제되어 도내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 이 규정에 따라 손실액을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버스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제출된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14. 12월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가 삭제되어,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됨으로 기존 산정방식과 새로운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 관련업계 의견수렴 내용,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계획,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차등지원 계획, 시행일을 명시한 이유,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는 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따라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자동차의 고급화
  -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 라. 낡은 차량의 대체
  -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택시호출시스템
  -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그 밖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법 제50조제2  
항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  
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  
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도지  
사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  
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  
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별도  
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  
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이 경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이 경우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5. 차량감가상각비. 이 경우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하는 수입금과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6. 차량보험료

7. 사고보상비

8. 매표수수료

9. 도로통행료

10. 적정이윤

11. 그 밖의 비용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밖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제3장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교통 및 회계 관련 공무원
2.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 밖의 전문가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사후관리 등

제20조(차등지원) 도지사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횡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금 지원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라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재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소요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8조(재정지원의 결정)
  -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시외버스 재정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년 1회 지원

다. 추계결과 : '16년부터 향후 5년간 연 17,490백만원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보통교부세)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17,490	3,498	3,498	3,498	3,498	3,498

## 6. 작성자 :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3,498	3,498	3,498	3,498	3,498	17,490
시외버스 재정지원	3,498	3,498	3,498	3,498	3,498	17,490
재원 조달	3,498	3,498	3,498	3,498	3,498	17,49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3,498	3,498	3,498	3,498	17,4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 관계법령 발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 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①영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text{손실액(1일)} = \tex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 \\ \times A \times (B - \text{실제승차인원}) \times \text{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 인원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제승차인원: 시·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삭제 <2014.12.31.>

##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5.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